

분 변동의 경우"로 함.

6. 심사결과

○수정가결(참석 10명 전원일치)

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  
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1998. 10  
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

○199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

○1998년 10월 2일

다. 상정일자

○제10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1998.  
10. 16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교통관리실장  
차동득)

가. 제안이유

○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 
으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 
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조례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태호)

○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  
행령에 근거하여 서울시를 크게 7개 지역  
(4대문 주변지역, 신촌지역, 영등포지역,  
영등지역, 잠실지역, 천호지역, 청량리지  
역)으로 분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 
및 시설의 도심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,  
'86. 6.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'93. 7.에 한  
번 개정되었음.

○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(교통  
영향평가 및 심의)  
"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  
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  
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교통영  
향평가 기관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교통  
영향평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"라고 규정  
하고 있으며

○동법 제2조제3의2호  
"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함은 상주인구 10  
만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  
활권에 있는 지역"으로 규정하고 있음.

○또한 동법시행령 제13조(교통영향평가 및  
심의의 대상)

"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일  
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은 별표 1  
과 같다.

<별표 1>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  
업 및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  
고 있음.

○따라서 본 조례의 존재 필요성이 없어 폐  
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관련법  
조항이 '95.12.과 '96.6.에 각각 개정되었  
으므로 조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  
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

4. 질의답변 요지

○없음.

5. 심사결과

○전원일치 원안가결(참석 10명, 찬성 10명)

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  
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 
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 중 "위원장,"을 "위원장은  
행정(2)부시장으로 하고"로 한다.

조례 제4조제1항 중 "2년"을 "1년"으로 한다.

안 제6조의 제목("소위원회")를 (현행대로 하기  
위하여) "(분과위원회)"로 하고, 동조제1항  
중 "소위원회"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 
"버스정책·서비스개선·경영합리화 등 전문  
분야별로 분과위원회"로 하며, 동조제2항 중  
"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"을 (현행대로 하기  
위하여) "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 및 분과위  
원장 선출"로 하고, 동조제3항 중 "소위원  
회"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"분과위원  
회"로 한다.

안 제7조에 제3항을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  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 
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  
과위원장이 소집한다.

조례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위원의 신분변동의 경우

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버스정착시민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2항중 “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으로 하고”를 “위원장은 행정(2)부시장으로 하고”로 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“2년”을 “1년”으로 한다.</p> <p>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4. 위원의 신분변동의 경우</p> <p>제9조제1항중 “운수행정계장”을 “운수행정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 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 지역 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</p> <p>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등록) 의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① 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(이하 “대표의원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</p> <p>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3조의2(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) ① 의장은 각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2개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</p>	<p>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,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.</p> <p>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5조(선서)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.</p> <p>“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”</p> <p>제6조의 제목 “(의장·부의장 선거방법)”을 “(의장·부의장의 선거방법)”으로 한다.</p> <p>제7조의 제목 “(의장·부의장 임기)”를 “(의장·부의장의 임기)”로 한다.</p> <p>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0조의2(의장·부의장의 겸직제한)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11조중 “의회운영위원회와”를 “각 대표의원과”로 한다.</p> <p>제16조중 “의회운영위원회와”를 “각 대표의원과”로 한다.</p> <p>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4조(의제의 발언의 금지)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제36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②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2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제37조제3항중 “의장이 정한다.”를 “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정한다.”로 한다.</p> <p>제49조제1항 단서중 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”를 “그 소속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과”로 한다.</p> <p>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51조(본회의중 위원회의 개최)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. 다만, 의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53조제1항중 “문화교육위원회”를 “문교보사</p>
--	---

위원회"로 한다.  
 제70조제3항을 삭제한다.  
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 제70조의2(시정질문)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.  
 ②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,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  
 ③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  
 ④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의 개의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 
 ⑤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.

다만,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.  
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 
 ①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.  
 제84조제5항중 "제1항, 제2항, 제4항의"를 "제1항, 제2항 및 제4항의"로 한다.

부 칙  
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'99시유재산관리계획안

청소년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를 매입하고, 시립서대문병원 점유부지를 매입하며, 소방방재본부 산하 소방파출소 신설 및 이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'99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.

관리계획 계상재산(목록 : 별첨)

○취득 4건: 토지6필지12,211.3㎡(3,693.9평)

'99 시유재산관리계획요약

구 분			필지수	면적(㎡)	금액(천원)	세 부 사 항
계	4건	토지	6	12,211.3	7,231,524	
취득	매입	토지	6	12,211.3	7,231,524	○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 매입 ○시립서대문병원 점유부지 매입 ○봉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○이문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

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개별공시 지 가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소유자 주소·성명	비고
	구분	소 재 지	수 량					
1	임야	금천구 시흥동 산 84-7	9,265.0	576,283	'99. 1/4분기	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	금천구 시흥동 산91 성부전외11	
2	구거	은평구 구산동 산 58-1외 2	1,052.1	852,241	'99 상반기	시립서대문병 원 점유부지	국가(건설교통부)	